



# 보 도 자 료



보도 일시	(인터넷) 2022. 4.26.(화) 10:00 (지 면) 2022. 4.26.(화) 10:00	배포 일시	2022. 4.25.(월) 15:30
담당 부서	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	책임자	과 장 안웅환 (044-203-6325)
		담당자	사무관 최홍보 (044-203-6320)

##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

### 주요 내용

- 사립유치원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여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
-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 시기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4월 26일(화)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령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는 사항과,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.

※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(2022.5.3. 공포 및 시행)  
주요 개정내용

- ①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인해 정보공시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, 정보공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법제화(제3조 제5항, 제3조의2 제3항 신설)
- ②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으로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 공시항목 신설 (별표1의3 제4호 다목)

-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「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(2021.3.11. 발표)」에 따라,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하여 ‘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’을 매년 10월에 공시하게 되었다.
  -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 자료의 수집·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, 정보공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공시 자료의 현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.
  - ‘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 기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’ 발표 시기(매년 11월)에 준하여 관련 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,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 현황 공시시기를 5월에서 11월로 조정하였다.
  - 또한, 대학의 ‘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’은 대학재정알리미([uniarlimi.kasfo.or.kr](http://uniarlimi.kasfo.or.kr))를 통해 통합 공시하기 위하여 대학정보공시 항목에서 제외하였다.

【붙임】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담당 부서	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	책임자	과 장	안응환 (044-203-6325)
		담당자	사무관	최홍보 (044-203-6320)
			사무관	전건우 (044-203-6630)

대통령령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“(초·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·횟수 및 시기 등)”을“(초·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,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공시하여야”를 “공시해야”로, “공시 횟수”를 “공시횟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시하여야”를 “공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초·중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수집·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.

제3조의2의 제목“(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·공시횟수 및 시기 등)”을“(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,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공시하여야”를 각각 “공시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유치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수집·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.

별표 1 제13호다목의 공시 시기란 및 같은 호 라목의 공시 시기란 중 “5월”을 각각 “11월”로 한다.

별표 1의2의 제목 중 “공시 횟수”를 “공시횟수”로 한다.

별표 1의3의 제목 중 “공시정보 범위·공시횟수 및 시기”를 “공시정보 범위, 공시횟수 및 그 시기”로 한다.

별표 1의3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적립금 현황	사립	연 1회	(결산)10월
-----------	----	------	---------

별표 1의3 비고 제1호 중 “표기한다”를 “표시하고, 사립 유치원은 ‘사립’으로 표시한다”로 한다.

별표 2 제12호자목 및 제14호아목을 각각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초·중등학교 <u>공시정보의 범위·횟수 및 시기 등</u>) ①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(이하 “초·중등학교”라 한다)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<u>공시하여야</u> 하는 정보의 범위, <u>공시 횟수 및 그 시기</u>는 외국인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제외한 초·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과 같고,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초·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<u>공시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조(초·중등학교 <u>공시정보의 범위,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</u>)</p> <p>① ----- ----- 공 시해야 ----- 공 시횟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공시해야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초·중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</u></p>

제3조의2(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

· 공시횟수 및 시기 등) ① 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,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.

② 유치원의 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수집·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.

제3조의2(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,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) ①

-----  
----- 공시해야 -----  
-----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공시해야 -----  
-----.

③ 유치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수집·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.